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91호]

「2026년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사업」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 사업안내서

2025. 08.



I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지역 강소SW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의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SW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산업(제조·서비스·공공 등)과의 융합 혁신 촉진을 통해 지역 디지털 산업 생태계 경쟁력 및 자생 기반(기술·인재·시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명) 2026~2027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4. ~ 2027. 12. (2년)
- (지원규모) 과제별 국비·지방비 220백만원 내외* (연간)
 - ※ 민간부담금 별도 :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 현물 포함), 민간부담금 중 현금 10% 이상,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과제 수) 2개 과제 이내
 - ※ 선정과제 수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과제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개발 단계, 테스트 현장 적용 단계, SW품질검증 단계, 서비스 고도화 단계, 사업화 수출 단계 까지 SW서비스 사업화를 위해 단계별로 맞춤 지원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지원가능 범위>



- (신청자격) 주관기관(포항테크노파크 경북디지털혁신본부) 및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북 권역거점 SW산업진흥기관(과기정통부 공고 2021-0925호)

- (참여기관) SW사업자, 대학, 연구소 가능

< 참여기관 요건 >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참여기관은 모두 같은 기초지자체 내 소재해야 함

3 제안 필수내용

- (사업화 계획) SW서비스* 개발, 사업화 계획 제시
 - * HW나 SW의 직접 판매가 아닌 HW나 SW 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SW 제품 등이 있음
- (개발) 사업화 대상 서비스의 개발 내용, 구현 방법, 목표 검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화) 현장 적용 또는 시범 운영 계획, 공공 및 민간 수요처, 사업 종료 후 지속 사업화 계획 제시
- (사업목표) 공통지표(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및 자율지표 제시
 - (사업화) 과제수행 결과물의 매출, 지적재산권(특허·상표권 등), MOU(사업화 관련 민간·공공기관 협력) 등 지표 제시
 -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계획 작성 필수, 순고용인원(국비+지방비 1억원당 1.4명 이상 신규고용,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지표 제시(사업계획서 공통목표)
- (PM 및 참여율) 각 참여기관 PM*은 30%이상 필수
 - *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연구개발 책임자 또는 부서장급
- (하드웨어투자) SW서비스 개발 이외 하드웨어개발은 불가(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사업비(현금)의 20% 이내 산정 가능)

- (품질관리) SW품질관리 및 테스트, 컨설팅 전문기업 선정 및 품질 수준 진단을 위한 SP위원(Software Process) 자문 의무추진(사업비 규모 자율)
- (MP선정) 전략산업전문가 또는 SW과제관리 전문가 1인 MP(Mission Provider) 선정
- (산출물) 수행계획서 상에 연차별 과제별 서비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각 산출물과 규격·수량 등을 명시
- (적용) 과제수행 결과물의 공공 또는 민간 수요처 적용 도입의사 협약서 제출
- (사업계획서) 50페이지 이내 작성(사업계획서 외 제출 서류 미포함)

4 추진 절차

공고 및 수요조사 접수	공고일 ~'25.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온라인 (http://ptp.or.kr)
수요조사 선정평가 *필요시 기업현장 방문가능	'25.10.3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간 : 기업별 10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 평가장소 : 포항TP 제5벤처동 회의실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평가(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사업계획서 작성 보완	'25.1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 계획 보완 ▷ 과제비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계획 검토
NIPA 제출 및 사업계획 검토	'26.1월~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견 반영
협약 체결	'2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사업 착수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	'26.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과 목표 공유
중간점검	'2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상황 확인 현장 점검
연차평가	'2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최종 평가

※ 상기일정은 경북디지털혁신본부(포항TP부설) 및 전담기관(NIPA) 진행 상황 및 NIPA 2026년 사업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 방법

- 일시 및 장소 : '25. 10. 30.(목) 예정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 평가방법 : 발표평가(과제별 2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제안 아이템 분야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5인 이상 평가위원 위촉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수행기업 역량 및 제안 과제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사업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계량하여 평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2026년 국비 및 지방비 배정 한도에 따라 최종 과제 선발(최대 2개 과제)
 - ※ 최종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산출
 - ※ 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해당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 [별첨 2]의 평가지표 참고

6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 공고일 ~ '25. 10. 1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 ※ 홈페이지 주소 : <http://ptp.or.kr>
 -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문 의 처 : 경북디지털혁신본부 디지털전략기획팀 서가진 사원
 - ※ (이메일) kjseo@ptp.or.kr, (전화) 054-223-2189

○ 제출서류

No	서류명	양식 제공 여부	비고
1	사업계획서	○	
2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3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 ③SW 사업자 신고서	-	원본 대조필 날인 (사본 각 1부)
4	2022~2024년 표준재무제표	-	원본 각 1부
5	①국세, ②지방세 ③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원본 각 1부 ※ 주관 및 참여기업 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관 및 참여기업 제출
7	NTIS 중복성 검사 결과	-	원본 각 1부
8	수요기관(지자체 등)의 도입의사 약속서	○	-
9	발표자료	-	PDF 파일

- ※ SW사업자 신고서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에서 신고(약 7일 소요) 및 발급받을 수 있음
-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거나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 ※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등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26년 지역디지털기업 성장지원사업”의 경북지역 내 유망과제 선정을 위함이며, 본 공고에 제안 및 선정되지 않은 과제는 지원 불가함
- 본 사업은 비R&D 사업이며, 최종 목표는 원천기술이나 시제품 개발이 아닌 매출 발생이 가능한 상용화 개발임
- 과제별 1·2차년도 결과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목표를 제시해야 함 (1차년도 성과가 목표 대비 현저히 저조할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품질컨설팅, 테스트, 검증) 활동, 마케팅 활동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누락이 발견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마감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 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출 후에 추가자료 요청은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사업 제안(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사업계획 확정 이후 협약 시 추가 서류(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를 요청할 예정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과거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과제는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중복성 검토 후 제출(필수)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화생절차·개인화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적자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 의견이 "한정"

- 신규채용인력은 채용일이 과제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인정
- 사업을 통해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및 하위 지침에 따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 ICT기금 운용 관리 규정
- ICT기금사업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용

II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연구개발역량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 내 예비선도SW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에 맞춘 자율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

* 예비SW선도기업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

2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 4. ~ 2026. 12. (1년)
- (지원규모) 국비·지방비 220백만원 내외*
 - ※ 민간부담금 별도 :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 현물 포함), 민간부담금 중 현금 10% 이상,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과제 수) 1개 과제 이내
 - ※ 선정과제 수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지역 내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술수요에 맞춘 지원으로 단기간에 성과 창출 도모
- (지원분야) 일자리창출형, 기술사업화형, 기업성장형 中 택1 필수

구분	지원분야 대상
일자리 창출형	- 단기간 내 신규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 이미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출시 임박하여 추가 채용을 통해 바로 생산·서비스 공급능력을 늘릴 수 있는 기업
기술 사업화형	- 보유(또는 이전·공동개발 예정) 기술을 시장성 있는 제품·서비스로 구체화(TRL 단계 상승)하고 매출·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 - 파일럿·시제품 단계에서 상용화 진입 장벽(시험·인증·설계 고도화 등)을 해결하고 사업화를 개시할 수 있는 기업
기업 성장형	- 이미 일정 매출·조직 기반이 있는 기업의 스케일업(신시장 확대, 수출, 투자유치, 구조적 매출 성장) 가속할 수 있는 과제 - 외부 투자·수출·글로벌 파트너링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

- (지원내용)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분야(일자리창출형, 기술사업화형, 기업성장형)를 선정하고, 이행과제를 사업비 범위 내 자율제안

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예시)
경영	경영법률 컨설팅, 투자유치, 네트워크 지원, 산학연 및 지역 연계
기술고도화	테스트, 인증, 특허, 기술자문
해외시장 진출	현지화 전략, 전시회 참가, 온라인 전시

3 제안 필수내용

- (사업화 계획) 지원분야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성장 계획, 디지털 신기술분야* 新서비스사업화(기술고도화) 계획, 해외시장 진출 계획 등 제시
 -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로봇틱스, 양자컴퓨터,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실감미디어 등
- (일자리 창출 및 기업성장) 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계획, 신규고용 계획,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 전략 등 제시
- (기술고도화) 사업화 대상의 개발 내용, 구현 방법, 목표 검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 (해외시장진출) 목표 해외시장 현황, 시장 개척 전략 및 방법, 지속 사업화 계획 등 제시
- (사업목표)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 등 공통 성과지표 외에 지원 분야에 맞게 성과측정이 가능한 도전적 세부성과지표 제시

< 중점분야 세부 성과지표 예시 >

지원 유형	중점분야 세부 성과지표
일자리 창출형	청년고용 10억당 00명, 신규채용 정규직 비율 00%이상 달성시
기술 사업화형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00건, 해외 특허 0건
기업 성장형	직전 3개년 연평균증가를 대비 00%이상 달성, 해외수출 0억원이상 또는 0건 이상

- (PM 및 참여율) 각 참여기관 PM*은 30%이상 필수

*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연구개발 책임자 또는 부서장급

- (하드웨어투자) SW서비스 개발 이외 하드웨어개발은 불가(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사업비(현금)의 20% 이내 산정 가능)
- (MP선정) 전략산업전문가 또는 SW과제관리 전문가 1인 MP(Mission Provider) 선정
- (산출물) 수행계획서 상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각 산출물과 규격·수량 등을 명시
- (적용) 과제수행 결과물의 공공 또는 민간 수요처 적용 도입의사 협약서 제출
- (사업계획서) 50페이지 이내 작성(사업계획서 외 제출 서류 미포함)

4 추진 절차

공고 및 수요조사 접수	공고일 ~'25.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온라인(http://ptp.or.kr)
수요조사 선정평가 *필요시 기업현장 방문가능	'25.10.3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간 : 기업별 10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 평가장소 : 포항TP 제5벤처동 회의실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평가(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사업계획서 작성 보완	'25.1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 계획 보완 ▷ 과제비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계획 검토
NIPA 제출 및 사업계획 검토	'26.1월~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견 반영
협약 체결	'2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사업 착수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	'26.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과 목표 공유
중간점검	'2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상황 확인 현장 점검
연차평가	'2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최종 평가

※ 상기일정은 경북디지털혁신본부(포항TP부설) 및 전담기관(NIPA) 진행 상황 및 NIPA 2026년 사업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 방법

- 일시 및 장소 : '25. 10. 30.(목) 예정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 평가방법 : 발표평가(과제별 2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제안 아이템 분야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5인 이상 평가위원 위촉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수행기업 역량 및 제안 과제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사업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계량하여 평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2026년 국비 및 지방비 배정 한도에 따라 최종 과제 선발 (1개 과제)
 - ※ 최종 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산출
 - ※ 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해당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 [별첨 2]의 평가지표 참고

6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공고일 ~ '25. 10. 1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 ※ 홈페이지 주소 : <http://ptp.or.kr>
 -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경북디지털혁신본부 디지털전략기획팀 서가진 사원
 - ※ (이메일) kjseo@ptp.or.kr, (전화) 054-223-2189

No	서류명	양식 제공	비고
1	사업계획서	○	
2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3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 ③SW사업자 신고서	-	원본 대조필 날인 (사본 각 1부)
4	2022~2024년 표준재무제표	-	원본 각 1부
5	①국세, ②지방세 ③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원본 각 1부 ※ 주관 및 참여기업 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관 및 참여기업 제출
7	NTIS 중복성 검사 결과	-	원본 각 1부
8	수요기관(지자체 등)의 도입의사 약속서	○	-
9	붙임4.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역량계산식 엑셀파일	○	
10	발표자료	-	PDF 파일

※ SW사업자 신고서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에서 신고(약 7일 소요) 및 발급받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거나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26년 지역디지털기업 성장지원사업”의 경북지역 내 유망과제 선정을 위함이며, 본 공고에 제안 및 선정되지 않은 과제는 지원 불가함
- 본 사업은 비R&D 사업이며, 최종 목표는 원천기술이나 시제품 개발이 아닌 매출 발생이 가능한 상용화 지원임
- 중간점검 등의 과정에서 성과가 목표 대비 현저히 저조할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누락이 발견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마감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 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출 후에 추가자료 요청은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사업 제안(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사업계획 확정 이후 협약 시 추가 서류(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를 요청할 예정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제외 대상

- 연구개발혁신 역량점수, 성장단계별역량점수 모두 3점 미만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과거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과제는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중복성 검토 후 제출(필수)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적자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 의견이 "한정"

- 신규채용인력은 채용일이 과제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인정
- 사업을 통해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및 하위 지침에 따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 ICT기금 운용 관리 규정
- ICT기금사업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용

별첨1

참여 사업수행기관 지원요건(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선도기업 선정 자격(참여기관 중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으로 재분류)

(주관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SW기업

※ SW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 SW 관련업 또는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 기업

(참여기업) SW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주관기업(경북 SW기업) 단독으로 수행가능

※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할 경우, 주관+참여 구성의 50%이상 경북 소재 기업으로 구성해야함

※ 재단의 선정 규정 방식 및 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예비선도기업 세부요건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

연구개발 혁신역량	5점	4점	3점	2점	1점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이상	5%이상~10%미만	3% 이상~5%미만	0%초과~3%이하	없음
연구개발 인력비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0%초과~10%이하	없음
특허	10개 이상	6개~10개 미만	2개~5개 미만	1개	없음
성장단계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 증가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0%초과~10%미만	없음(-성장)
매출액 규모	50억 이상	30억이상~50억미만	10억이상~30억미만	3억초과~10억미만	3억 미만
고용 규모	100명 이상	30인이상~100인미만	10인이상~30인미만	5인초과~10인이하	5인 미만

<연구개발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배점 및 구분>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단 '23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23년과 '24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

(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 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 종사자수 : 2025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

('22~24년 또는 '23~25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별첨2

평가항목(Track1 · 2)

① Track1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10)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성 - 시장성 및 향후 사업화 가능성 	10	10
사업 경쟁력 (20)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화 전략 및 전문성, 기술적 구현가능성과 그에 대한 근거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20
	수요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결과물의 수요처 확보 여부 	10	
추진체계 및 전략 (20)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사업비 편성 및 사용 계획의 적정성 	10	20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주관/참여기업 간 역할의 구체성 및 명확성 	10	
사업 추진 내용 (40)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 - 상품화 및 시제품 제작 방안의 구체성 - 국내·외 시장진출 가능성 	15	40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결과물의 차별성 - 개발기술의 기존 기술대비 우수성 및 상품성 	15	
	품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확보현황 및 활용가능성 - 지식재산권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기대 효과 (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 지역산업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성 	5	10
	지역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지역 산업발전 기여도(고용창출, 생산액 등) 	5	
소계			100	

② Track2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제안서 (40)	목적 부합성	-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사업수행능력 및 지원체계	-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전문성	
	목표관리	- 프로그램 목표관리의 도전성 및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지표/중점지원목표/기타목표 등 설계의 구체성·난이도	
기업 역량 (20점)	기술 경쟁력	- 서비스 개발 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경쟁성 * 기술 차별성 및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유사 중복성	20
	선도화 노력	-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및 지원 기관의 노력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특허 등 연구개발역량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 매출증가, 고용증대 등 성장역량 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기대 효과 (30점)	성장 잠재력	- 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 기업대내외 환경분석에 기반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예시 : SWOT분석 등), 주요 고객/시장 분석의 타당성 * 기업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30
	성과 파급력	- 기대성과의 파급효과 및 적정성 * 신규시장 창출, 수출 증대 등 지역SW기업경쟁력 증대 효과 * 과제 종료 이후 해당서비스를 통해 지역SW산업 및 타지역 확산효과	
사업 관리 (10)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10
소계			100

별첨3 민간부담금 산정 기준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과 지방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 기업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
 - ※ 총사업비 대비 기업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총사업비의 구성 비율은 수행기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지방비 + 기업부담금(현금+현물)**
 * 정부출연금 + 지방비 : 수행과제의 컨소시엄이 지원받는 금액
 * 기업부담금 : 수행과제의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정부지원금 기준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정부출연금+지방비 지원 기준 기업부담금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대기업	그 외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수행기관별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대기업	그 외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3.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수행기관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으로 매칭 가능

- ※ (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
- ※ (유형자산 계상기준) 장비, SW, 설비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내용 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는 자산에 한해 구입가(VAT제외) 20% 이내로 산정
-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은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 총사업비 대비 기업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 지방비는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해야 하나, 지방재정 상 부담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의 지방비 부담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전까지 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5. "그 외"이라 함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등